

예 산 총 칙

2011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19,551,859	9,586,556
일반회계		297,566,847	8,927,005
특별회계		21,985,012	659,550
기타특별회계		21,985,012	659,55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807,382	24,221
	주택사업특별회계	561,363	16,841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1,067,555	32,027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796,508	23,895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625,044	48,751
	주차장특별회계	453,208	13,596
	수질개선특별회계	15,849,047	475,47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661,816	19,854
	기반시설특별회계	163,089	4,893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명시이월 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110,754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5,1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간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